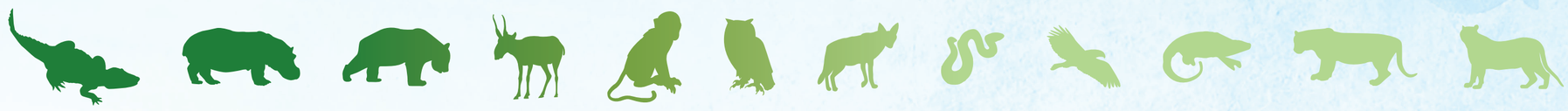
행복한
대한민국을 여는
정부 3.0
[개방 · 공유 · 소통 · 협력]

경제혁신
3개년 계획

우리가 알고 있는 야생생물이 20분마다 1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.



우리가 모르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 동 · 식물이 어쩌면
법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일 수도 있습니다.

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보유하고 있을 경우
자진신고 기간내 꼭 신고하세요



신고기간

▶ 2015년 8월 1일 ~ 10월 31일(3개월)

신고대상

▶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의무(양도 · 양수 신고, 보관허가 등)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(CITES종) 및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

신고방법

▶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별지 제12호, 제14호, 제25호, 제26호의2 서식(양도 · 양수 신고서, 보관신고서, 인공증식 증명서 발급신청서)중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유역[지방]환경청 자연환경과에 제출

자진신고자 혜택

▶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(징역 · 벌금 · 과태료 · 몰수) 면제

- 단, CITES 부속서 I 해당종이거나, 자진신고자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규정한 사육 · 보관 시설이 없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몰수 조치 가능

상담 지원창구

환경부	생물다양성과	044-201-7248
한강유역환경청	자연환경과	031-790-2848
낙동강유역환경청	자연환경과	055-211-1632
금강유역환경청	자연환경과	042-865-0746
영산강유역환경청	자연환경과	062-410-5229
원주지방환경청	자연환경과	033-760-6072
대구지방환경청	자연환경과	053-230-6459
새만금지방환경청	자연환경과	063-270-1854

환경부
MINISTRY OF ENVIRONMENT
http://www.me.go.kr